

패소자 부담 소송비용 -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지급한 변호사보수 산입 가능: 대법

원 2020. 4. 24.자 2019마6990 결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 소송목적의 값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
|--|---------------|
| 2,000만원까지 부분   | 10%           |
|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br>[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frac{8}{100}$ ] | 8%            |
|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br>[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frac{6}{100}$ ]     | 6%            |

|  |      |
|--|------|
| <b>1억원</b> 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br><b>[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math>\frac{4}{100}</math>]</b> | 4%   |
|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br><b>[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x <math>\frac{2}{100}</math>]</b>      | 2%   |
|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br><b>[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math>\frac{1}{100}</math>]</b>          | 1%   |
| <b>5억원</b> 을 초과하는 부분<br><b>[1,3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math>\frac{0.5}{100}</math>]</b>      | 0.5% |

**쟁점** -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변호사 보수를 지급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판단요지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 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까지 포함되고(대법원 2005. 4. 30.자 2004마1055 결정 등 참조), 제3자가 지급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지급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로 인정할 수 있다.

본안소송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신청인(재항고인)은 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인바,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A 법무법인에 위 본안소송의 대리를 위임하면서 그 변호사 보수는 향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변호사 보수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위탁자가 위 소송위임 및 보수약정에 따라 A 법무법인에 지급하기로 한 변호사 보수는 소송당사자인 재항고인이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아울러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 보수규칙에 의해 결정되는 변호사 보수는 위 보수약정에 따라 A 법무법인에 지급될 보수액으로서 상대방이 재항고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에 산입되어야 한다.

첨부: 대법원 2020. 4. 24.자 2019마6990 결정

침해대응/감정, 형사/민사소송, 손해배상, One-Stop 대응, 십수년 A~Z 수행

T. 02-591-0657 E. [kkh@kasanlaw.com](mailto: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http://www.kasanlaw.com)